체육시설물관리규정

2007.12.17.제정 2009.07.01.일부개정 2011.04.18.일부개정 2012.08.01.일부개정
2014.03.28.일부개정 2017.03.01.일부개정 2018.07.01.일부개정 2019.09.06.일부개정
2020.12.01.일부개정 2021.06.01.일부개정 2022.04.01.일부개정

<시설안전팀>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.) 체육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"체육시설물"이라 함은 대학 내에 축조된 인조잔디운동장, 동명스타디움 등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체육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, 교직원 및 외부단체에 적용된다.

제4조(관리운영의 원칙) 체육시설물은 **시설안전팀**에서 관리운영하며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은 "체육시설물관리위원회"에서 정한다. (**개정**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 2017.3.1. 2019.9.6.,**2022.4.1.**)

제2장 체육시설물관리위원회

제5조(위원회) 체육시설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체육시설물관리위 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. (개정 2011.4.18, 2012.8.1.)

③ 위원은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스포츠재활학과장, **시설안전팀장**, **학생·장학봉사팀장**을 당연직으로 하며, 그 외 위원은 총장이 교직원 중 위촉한다. (**개정**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2017.3.1., 2018.7.1., 2019.9.6., 2020.12.1., 2021.6.1.,**2022.4.1.**)

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(개정 2019.9.6.)

1. 체육시설물 신축, 중축에 관한 사항
2. 체육시설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3. <삭제 2019.9.6.>

제3장 체육시설물 관리

제9조(사용 및 원상복구) ① 체육시설물 사용은 체육관련 수업, 교직원 및 학생들의 체육행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.

② 체육시설물 사용 중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가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용신청) 체육시설물 사용 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과수업 : 수업시간표에 의거 체육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체육교과 수업시간을 전자문서 자원예약을 통하여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.
2. 동아리 : 학생처(학생 · 장학봉사팀)에 집회(행사)허가신청서 제출 후 허가를 받은 행사에 한하여 허가한다. (개정 2011.4.18, 2012.8.1., 2014.3.28.,2022.4.1.)
3. 학과 및 교직원 각종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<서식1>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관리부서(시설관리팀)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7.3.1.)
4. 외부단체에서 체육시설물을 사용코자 요청 시에는 교과수업 및 교내 각종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승인하며, 제14조에 의거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한다.
5. 허가된 시설물을 사용목적 외 사용 시에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용허가의 우선 순위) 체육시설물 사용 허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교과수업
2. 학교공식행사
3. 학생 및 교직원 체육활동
4. 외부단체

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) 체육시설물 제반 준수사항과 체육시설물 사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3조(사용시간) 체육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용시간

○ 연중 : 06:00～21:00(개정 2009.7.1)

○ 야간조명사용 : 해당기간 내 야간조명 사용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(개정 2009.7.1)

2. 제1호에서 정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한 행사에 한하여 승인한다.

제14조 (사용료 징수) 시설물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 의거 시설물 사용료을 별도세칙으로 책정하여 징수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6조 제3항, 제10조 제2호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다만, 제6조 제3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(개정 2019.9.6.,2022.4.1.)

시설물 사용 승인 신청서

부서(학과)명			
시설물명			
사용내용			
사용기간	년 월 일 시 분 ~ 년 월 일 시 분(시간)		
사용인원		휴대폰	

동명대학교 체육시설물 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제반 준수사항과 체육시설물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설물을 사용코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. .

사용 담당자(대표학생) : (서명/인)

사용 책임자(학과/부장) : (서명/인)

※ 토/일/공휴일 사용일 경우만 제출(평일의 경우 Effice 자원 예약 후 자율 사용 가능)

붙임 행사계획서 1부. 끝.

자르는 선

사 용 허 가 증

사용기간	년 월 일 시 분 ~ 년 월 일 시 분(시간)			
시설물명				
사용목적				
사용담당자	소속		접수일	접수인(시설안전팀 담당자)
	성명		시설안전팀	(서명)

동 명 대 학 교 총 장